

법 규 준수 여부 평가서

평가자

현장소장

현장 : GH FAB 마감공사

평가 일시 :

26.06.05

환경안전보건법규	법규 조항 평가 항목	관리 방법	실행부서	평가결과		비고
				Y	N	
환경안전보건법규	해당 유무					
	제5조 사업주 등의 의무	사업체에 예방을 위한 기준·제한·적용범위의 조성 근로조건 개선, 정보제공	전부서	○		
	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	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지정	전부서	○		
	제16조 관리감독자	관리감독자 지정	전부서	○		
	제17조 안전관리자	안전관리자 선임 확인	전부서	○		
	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	장기적인 안전 보건 교육	전부서	○		
	제32조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	안전 보건에 관한 직무 교육	전부서	○		
	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	사업주는 유해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 평가 및 조치	전부서	○		
	제37조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부착	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또는 부착	전부서	○		
	제57조 산업재해 발생 온배 금지 및 보고	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온배해서는 안됨.	전부서	○		
산업안전보건법	제114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	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의 관리 요령 게시 및 교육	전부서	○		
	제129조~131조 건강진단	일반건강진단, 특수건강진단, 임시건강진단 실시	전부서	○		
	제25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	안전보건교육, 위험성평가, 작업환경측정, 건강검진에 관한 보좌 및 지도·조언 등	전부서	○		
	제99조 유해, 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	근로조건의 개선(유무(소음, 발열, 장소))	전부서	○		
	제26조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	안전, 보건에 관한 교육(정기, 특별교육)	전부서	○		
	제37조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	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 위험요인, 위험성 결정의 내용,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및 3년간 보존	전부서	○		
	제79조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	협의체 구성 및 협의사항(작업의 시작시간, 작업장 연립법법 대피방법 등)				
	제89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	사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 보관(1년)	전부서	○		
	제197조 일반건강진단의 주기 등	사무직 근로자: 2년 1회 그 밖의 근로자: 1년 1회 이상	전부서	○		
	제3조 전도의 방지	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청결상태로 유지	전부서	○		
산업안전보건 시행규칙	제8조 조도	조정밀직압: 750룩스(lux) 이상 정밀직압: 300룩스 이상 보통직압: 150룩스 이상 그 밖의 직압: 75룩스 이상	전부서	○		
	제9조 작업환경	작업환경 설치, 기계, 설비 작업높이로 조절	전부서	○		
	제16조 위험물등의 보관	위험물질에 대해 작업장과 별도의 장소에 보관	전부서	○		
	제21조 통로의 조영	75룩스 이상의 차광 또는 조명시설 설치	전부서	○		
	제239조 위험물등이 있는 장소의 화기 등의 사용금지	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 작업 금지	전부서	○		
	제42조 추락의 방지	높이 2미터 이상인 장소에 작업발판 설치	전부서	○		
	제33조 보호구의 관리등	안전보호구의 착용여부 점검	전부서	○		
	제188조 고압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 금지	중량물 취급, 반전미스크 펠더, 작업복 등 적합한 보호구 지급	전부서	○		
	제189조 섬유로프 등의 점검	고압이 끊어진 것, 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된 것	전부서	○		PP3포 사용 PD3로 교체
	제4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	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여 함	전부서	○		
중대재해처벌법	제6조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	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(1년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)	전부서	○		
	제7조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	그 위반 행위 시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그 기관에 벌금 부과	전부서	○		
	제8조 안전보건교육의 수간	중대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보건 교육 이수(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)	전부서	○		
	제13조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 공표	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장의 명칭, 발생 일시와 장소,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 사실을 공표	전부서	○		
	제9조 사업주,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	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	전부서	○		
	제10조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주,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및 양벌 규정	양벌 적용	전부서	○		
	제11조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	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외 8개 항	전부서	○		
	제44조 중대산업재해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	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상황 점검 외 4개 항	전부서	○		
	제36조, 시행령 21조: 보험금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	산업재해 조사표 유지	전부서	○		
	제37조: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	부적합 및 산재 발생 대장 보유	전부서	○		
중대재해보상보험법	제37조: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	산업재해 조사표 유지	전부서	○		
	제37조: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	부적합 및 산재 발생 대장 보유	전부서	○		
	제40조: 요양급여		전부서	○		
	제17조: 근로조건의 명시	근로계약서	전부서	○		
	제23-24조: 해고등의 제한		전부서	○		
	제41조, 시행령 제20조: 근로자의 명부 및 기재사항	- 1주 간의 근로시간은 40 시간을 초과금지.	전부서	○		
	제53-56조: 연장근로 및 연장근로 제한, 휴일등	(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 초과 금지).	전부서	○		
	제17조: 근로시간		전부서	○		
	제23-24조: 해고등의 제한		전부서	○		
	제41조, 시행령 제20조: 근로자의 명부 및 기재사항		전부서	○		
근로기준법	제53-56조: 연장근로 및 연장근로 제한, 휴일등		전부서	○		
	제17조: 근로시간		전부서	○		
	제23-24조: 해고등의 제한		전부서	○		
	제41조, 시행령 제20조: 근로자의 명부 및 기재사항		전부서	○		
	제53-56조: 연장근로 및 연장근로 제한, 휴일등		전부서	○		
	제17조: 근로시간		전부서	○		
	제23-24조: 해고등의 제한		전부서	○		
	제41조, 시행령 제20조: 근로자의 명부 및 기재사항		전부서	○		
	제53-56조: 연장근로 및 연장근로 제한, 휴일등		전부서	○		
	제17조: 근로시간		전부서	○		
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	제12조, 제6조, 규칙 6조: 폐기물상(경외), 분리수거	1. 폐기물의 처리기준	전부서	○		
	제13조, 별 제7조, 규칙 제9조~11조	- 지정 폐기물 : 폐오일, 폐페인트(액상)	전부서	○		
	제60, 61조	- 사업장 일반폐기물 : 페놀라스틱, 폐비닐, 폐장갑, 찹쌀레기 등	전부서	○		
		- 재활용 폐기물 : 폐전선, 폐금속, 폐종이, 캔 병 등(분리수거)	전부서	○		
		우물되어 주변환경을 오염, 전류성유기오염물질(응급조치, 사고신고)	전부서	○		
		전류성유기오염물질(수집, 운반, 보관처리)	전부서	○		
		전류성유기오염물질(신고)	전부서	○		
			전부서	○		
			전부서	○		
			전부서	○		
폐기물관리법	제12조, 제1항, 제2항	1. 폐기물의 처리기준	전부서	○		
	제22조		전부서	○		
	제24조 2항		전부서	○		
			전부서	○		
			전부서	○		
			전부서	○		
			전부서	○		
			전부서	○		
			전부서	○		
			전부서	○		
전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	제20조 제1항, 제2항	1. 폐기물의 처리기준	전부서	○		
	제22조		전부서	○		
	제24조 2항		전부서	○		
			전부서	○		
			전부서	○		
			전부서	○		
			전부서	○		
			전부서	○		
			전부서	○		
			전부서	○		

비밀
26.06.05
6 계도전, 선상전문 비인

성민내 민재호 외 1명 참여함